

2010. 01. 27(수)

제16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
거창군 감사청구주만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

검 토 보 고 서

총 무 위 원 회
전문위원 배성한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
2. 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
3. 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

<의안번호 제2010 - 1>

거창군 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01. 15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0. 01. 19.

2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조항을 간명화 하고,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(안 제1조).
 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→ 「지방자치법」
 -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근거 조항이 제13조의4에서 제16조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정비함(안 제1조, 제2조).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의4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제1항

다. 「지방자치법」에서 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권 연령에 맞게 하향 조정함(안 제2조).

○ 감사청구인 연령 조정 : 20세 이상 → 19세 이상

4. 법적근거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6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5. 검토의견

○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의 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권 연령을 당초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임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□ 「지방자치법」

<2006.1.11 개정되기 전>

제13조의4 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·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·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2007.5.11 전부개정 후 현행 법률>

제16조 (주민의 감사청구)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·도는 500명,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, 그 밖의 시·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(連署)로, 시·도에서는 주무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<의안번호 제2010 - 2>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01. 15.
- 나. 제 출 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0. 01. 19.

2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(법률 제9924호, 2010.1.1 공포·시행)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,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
- 군세의 세목 조정 및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군세 세목 중 보통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며, 목적세 중 사업소세를 삭제함(안 제3조).
- 나. 종전의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가 주민세로 조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함(안 제19조, 안 제19조의2 신설, 안 제20조, 안 제21조, 안 제21조의2 신설).

- 다. 종전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신설함(안 제2장제1절의2 신설(제23조의3부터 제23조의5까지)).
- 라.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(안 제2장제5절 삭제(제42조부터 제52조까지)).
- 마.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통합되는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함(안 제3장제2절 삭제(제96조부터 제101조까지)).

4. 법적근거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5조, 제6조
- 「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0. 1. 6 ~ 2010. 1.15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,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한편,

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□ 「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

제3조(지방세) 지방자치단체는 보통세인 취득세·등록세·면허세·지방소비세·주민세·지방소득세·재산세·자동차세·주행세·담배소비세·도축세 및 레저세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·공동시설세·지역개발세 및 지방교육세를 과세한다.

□ 「지방세법」

제5조(지방세의 세목) ①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.

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취득세
2. 등록세
3. 레저세
4. 면허세
5. 주민세
- 5의2. 지방소득세
- 5의3. 지방소비세
6. 재산세
7. 자동차세
- 7의2. 주행세
8. 삭제
9. 담배소비세
10. 도축세
11. 삭제

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도시계획세
2. 공동시설세
3. 삭제
4. 지역개발세
5. 지방교육세

<의안번호 제2010 - 3>

거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0. 01. 15.
- 나. 제출자 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 : 2010. 01. 19.

2. 개정이유

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「지방세법」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하고,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,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「지방세법」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규정을 정비함(안 제11조).
 - 지방세법 : 취득·등록·재산세 면제(지방세법 제273조제2항)
 - 감면조례 : 도시계획세 면제

- 나. 종전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(안 제15조의5 신설).
 - 화물적재공간 바닥면적 2m²미만 차량에 대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 세율 적용
- 다.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을 정비함(안 제18조, 제19조, 제20조).
 - 사업소세 →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

4. 법적근거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세법」 제7조, 제9조, 제132조의2, 제196조의5제1항, 제27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(2010. 1. 6 ~ 2010. 1.15) 결과 : 특기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되는 지방세감면 표준안의 범위에서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6. 참고자료

□ 「지방세법」

제7조(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)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.

제9조(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)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.